##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49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김성환·조 국·이재관

주철현 · 김남근 · 오기형

박해철 • 정진욱 • 위성곤

박수현 • 박홍근 • 임호선

김동아 • 박홍배 • 허성무

강준현 • 박민규 • 박용갑

박지혜 • 조인철 • 김교흥

송재봉 • 이광희 • 김영환

황명선 · 신정훈 · 김영배

김정호 • 양부남 • 전진숙

이병진 • 추미애 • 임미애

허 영 • 이용선 • 최민희

황정아 • 박희승 • 이연희

김태년 • 이워택 의위

(41위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필 요한 상황임.

그런데 중소기업은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

데이터 활용・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,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약 64%의 중소기업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,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・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·활용·보호·거래·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의 생성·활용·

보호・거래・공유 등 지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6조(업무) ① 중앙회는 다음	제106조(업무) ①		
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4의2.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		
	<u>촉진 및 산업데이터의 생성·</u>		
	활용·보호·거래·공유 등		
	지원		
5. ~ 28. (생 략)	5. ~ 28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		